친화회규약 11-1-3

규정번호 11-1-3
제정일자 1979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39차 개정
관리부서 총무회계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교직원 친화회라 한다.
제2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에 대한 상조(애경사)
2. 회원 친화회 퇴직전별금 지급
3. <삭 제(2018.05.10.)>
4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장 회원 및 회비

제5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우리대학 전임교원, 행정직원, 기술직원으로 한다.(개정 2022.04.08.)
제6조(경비)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7조(회비) 본 회의 회비는 회원 월 급여액 중 10,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시 공제 징수한다.

제3장 임 원

제8조(임원)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2. 운영위원 10명 : 교 원 5명(상임운영위원 1명)
   일반직 5명(여직원 1명, 기술직원 1명 포함)(개정 2022.04.08.)
3. 감사 2명(교원 1명, 사무직원 1명)
4.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간사(총무회계팀장)와 간사 및 간사보조(총무회계팀장 업무담당자) 각 1명을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제9조(임원 구성 및 임기) ① 회장은 본 대학 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상임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무)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본 회의 전반업무를 집행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운영사항 전반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를 집행한다.

③ 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.

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사업을 감사한다.

⑤ 상임간사(총무회계팀장)는 상임운영위원과 협의하여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제4장 회의(운영위원회)

제11조(회의)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학기 중에 개최하며,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을 회원들에게 서면 통보한다. 단,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규약의 변경
2. 세입·세출예산 및 결산
3. 기타 중요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12조(회의 개최 및 의결종족수)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장 급부 및 대여

제13조(급부) 본 회의 회원에 대한 제 급부금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, 회원의 퇴직 당해년도에 회원 본인의 회갑이 있을 시 당해년도 1월 중에 지급한다.

① 축의금 :	회원결혼	50,000원	부모회갑	50,000원	자녀결혼	50,000원
	회원회갑	50,000원	생남생녀	50,000원	배우자부모회갑	50,000원
	배우자회갑	50,000원				
② 조위금 :	회원사망	100,000원	부모사망	50,000원	배우자사망	50,000원
	자녀사망	50,000원	조부모사망	50,000원	배우자부모사망	50,000원

③ 위로금 : (삭제)

④ 친화회 퇴직전별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.

1. 개인별 총 불입금과 그 불입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.
   배당금 = 이익금 × (개인별 불입금 / 총 불입금)
2. 친화회비에 대한 이익금은 회계말 결산에 의하여 배당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퇴직하는 회원은 퇴직일 익월 말 결산하여 친화회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13조의2(경조사 급여)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사 급여를 공제한다.

① 경조사 급여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17.02.27.)

- 교수~조교수, 행정직 5급 및 팀장 직급 이상 5,000원(개정 2018.08.27)
- 행정직 6급·7급 및 기술직 6급·7급 3,000원,(개정 2020.12.07.,2022.04.08)
- 행정직 8급 이하 및 기술직 8급 이하 2,000원(개정 2020.12.07.,2022.04.08)

② 기본공제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다음과 같으며, 친화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공제총액의 1/2만 지급한다.

내 용	본인	배우자	자녀	본인/배우자 부, 모	조부/조모
결 혼	1		0.5		
회 갑	1	0.5		0.5	
사 망	2	1	1	1	0.5

제14조(대여)<삭제(2018.05.10.)>

제6장 회 계

제15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6조(감사보고) 감사는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과 사업에 대한 실적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)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상임운영위원과 상임간사, 간사, 간사보조에게는 월50,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며, 각종 회의 및 특별 업무상 필요할 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문서관리

제18조(문서보존기간) 친화회 문서의 보존기간은 장부 및 친화회 개인별카드는 영구로 하고 수입지출 및 운영에 관한 문서는 5년으로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약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약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약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본 규약은 198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약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약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약은 199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약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규약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규약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규약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본 규약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본 규약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14. 본 규약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본 규약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6. 본 규약은 199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17. 본 규약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18. 본 규약은 200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19.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200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    ② (경과조치)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규약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0. 본 규약은 200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1. 본 규약은 2003년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22. 본 규약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3. 본 규약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24. 본 규약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5. 본 규약은 200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26.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② (경과조치) 제5조의 회원 중 2009년 5월 1일 이전 본 회에 가입이 되어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원은 임용기간 동안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며, 제14조 제2항의 대여금 이자에 대한 개정 규약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27.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② (경과조치) 제14조 제②항의 대여금 이자에 대한 개정 규약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적용하며, 대여금 상환의 기준액은 2010년 6월 1일 대여 잔액으로 적용하여 최대 100회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한다.
28. 본 규약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9. 본 규약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0. 본 규약은 2012년 4월 26부터 시행한다.
31.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201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5조(회 원) 및 제8조(임 원) 제②항의 운영위원에 대한 개정 규약은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.

32. 본 규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3. (시행일) 본 규약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34.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4조(대여) 및 제17조(수당)에 대한 개정 규약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35. 이 규약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36. ①(시행일) 본 규약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3조(급 부)에 대한 개정 규약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37. 이 규약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38. 이 규약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39. 이 규약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40. 이 규약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11조제3호)